

의안번호	2213638
의 퇴 인	이인선의원
회 답 일	2025.11.28.
추계번호	25D5636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집행하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200만원, 2031년 4억 7,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7억 4,200만원(연평균 3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시 통지	242	287	339	401	474	1,742	3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판사는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하여야 함 - 서면경고 -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의 부착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법원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경우에는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안 제15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2	안 제13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함	재량규정의무규정
3	안 제14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법원은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피해자 및 교제폭력행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함 - 검사, 사법경찰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 교제폭력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 교제폭력행위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를 한 사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2	안 제13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3	안 제14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	미첨부3호 제정안에 따른 잠정조치 변경 건수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변경 건수 자료가 부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¹⁾ 및 제13조²⁾에서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 잠정조치 및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따른 통지비용을 추계함
 - 교제폭력 발생 건수는 2020~2023년 4년간 평균 증가율인 15.9%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 2020~2023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A)	8,951	10,538	12,828	13,939	15.9%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제정안의 잠정조치 시 통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교제폭력 발생 건수에 잠정조치가 시행되는 비율과 잠정조치 1건당 통지 건수, 통지 1건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교제폭력행위에 대한 잠정조치 건수는 유사 범죄인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시행 건수 및 비율을 참고하여 추계함
 - 교제폭력행위 중 잠정조치가 집행되는 비율은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시행 비율인 22.6%로 추계기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1)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3638) 제12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6.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7.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8.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3638) 제13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표 3]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발생 건수, 임시조치 건수 및 비율: 2021~2024년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평균
가정폭력범죄 발생 건수	52,437	51,023	57,786	51,573	52,514
임시조치 시행 건수	9,625	10,863	12,782	14,791	12,015
임시조치 시행 비율(%)	18.4%	21.3%	22.1%	28.7%	22.6%

자료: 대법원

- 대법원에 따르면 잠정조치에 따른 통지는 우편송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 1건당 평균 9건의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편송달에 의한 통지 1건당 단가는 2025년 기준 5,280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³⁾
-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비용은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건수 추정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처분 및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의 경우 제정안에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4조에서 규정한 잠정조치 변경에 따른 통지 비용의 경우, 잠정조치 변경 건수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변경 건수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1.9	2.0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건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표 4] 연도별 교제폭력범죄 발생 건수 및 잠정조치 건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건)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교제폭력범죄 발생 건수	21,701	25,152	29,151	33,786	39,158
잠정조치 시행 비율	22.6%	22.6%	22.6%	22.6%	22.6%
잠정조치 시행 건수	4,904	5,684	6,588	7,636	8,850

자료: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집행하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7억 4,200만원(연평균 3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잠정조치 결정 건수(건, A)	4,904	5,684	6,588	7,636	8,850	—	—
잠정조치 1건당 통지 건수(건, B)	9	9	9	9	9	—	—
우편송달 1건당 단가(원, C)	5,493	5,603	5,715	5,830	5,946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D=A \times B \times C$)	242	287	339	401	474	1,742	3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